
보 건 소

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보건행정과



(청사 유지 관리) (P - 11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2.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김포시보건소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구급차 구입으로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이송, 인력 충원에 따른 가구 구입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310,860	617,195	425,785				191,410	306,335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310,860	617,195	425,785				191,410	306,335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확진자, 재택치료자 긴급 이송을 위한 구급차 구입
- 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의 이송 가능 구급차 부족
-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차량 부족
- 격벽 설치된 일반 차량으로 이송 시 환자 안전 우려 및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자, 직원의 피로도 누적
- 환자 이송 시 일반 차량이 아닌 응급구조장비가 구비된 구급차 필요
- 운전자 및 의료진 보호를 위하여 음압특수구급차 필요
- 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사무용 책상, 의자, 서랍 등 구입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본예산 요구액	비고
		합 계 =	191,410	
청사 유지 관리	405-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	◎음압특수구급차 182,000,000원*1대 = 182,000 ◎캐비닛 270,000원*5개 = 1,350 ◎파티션 176,000원*10개 = 1,760 ◎업무용 의자 270,000원*10개 = 2,700 ◎업무용 책상 200,000원*10개 = 2,000 ◎이동식 서랍장 160,000원*10개 = 1,600		191,410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12. : 구급차 및 사무용 가구 구입 및 설치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사무관리비(기자재, 소모품 등) : 29,699천원(집행율 99.9%) - 공공운영비(청사유지관리용역, 공공요금, 시설물유지관리비) : 357,091원(집행율 99.6%) - 자산취득비(냉장고, 책상 등) : 7,860천원(집행율 100%)	
2020년	- 사무관리비(기자재, 소모품 등) : 38,338천원(집행율 82.3%) - 공공운영비(청사유지관리용역, 공공요금, 시설물유지관리비) : 234,238천원(집행율 97.9%) - 자산취득비(민원접수대, 교육실 음향장비 등) : 25,005천원(집행율 99.6%)	
2021년	-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: 81,225천원(집행율 77%) - 사무관리비(기자재, 소모품 등) : 36,298천원(집행율 83.3%) - 공공운영비(청사유지관리용역, 공공요금, 시설물유지관리비) : 215,159천원(집행율 89.2%) - 자산취득비(신규 직원 책상, 의자, 사물함, 교육실 음향장비 등) : 33,503천원(집행율 95.4%)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396,010	394,651	-	1,359	
2020년	310,860	297,581	-	13,279	
2021년	425,785	366,675	182,000	59,110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민정	전화	500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) (P - 11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01. ~ 2021.12. ○ 위 치 :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-11외
- 사업대상 : 보건지소 6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속한 민원응대 처리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44,688	28,136	67,290			△29,660	△9,494	△16,552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44,688	28,136	67,290			△29,660	△9,494	△16,552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양촌읍보건지소의 제증명 발급이 중단되어 검사시약 등 사용감소로 인한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지역보건법	제13조 및 제 24조 제1항
근거내용	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지원■	보조지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양촌읍보건지소 제증명 발급중단으로 생배지 등 검사시약 소모품 사용감소로 예산 감액
- 양촌읍보건지소 운영 중단에 따른 의약품비 감액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3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 =	△9,494	
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	307-01 의료 및 구료비	◎검사 시약(양촌읍) (75,000원*20종*0월)-(75,000원*20종*6월) =	△9,000	△9,494
		◎X-ray 판독비 (1,000원*6건*1회)-(1,000원*50건*4회) =	△194	
		◎진료기자재 (300,000원*0회)-(300,000원*1회) =	△3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~2021.12. : 보건지소 6개소 및 검사실(양촌) 운영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보건지소(6개소) 운영 : 진료 실적 9,095건, 예방접종 실적: 4,174건 - 검사실 운영(양촌) : 검사 실적 24,876건	
2020년	- 보건지소(6개소) 운영 : 진료 실적 1,619건, 예방접종 실적: 185건 - 검사실 운영(양촌) : 검사 실적 41,904건	
2021년	- 월곶면보건지소 운영 : 진료실적 247건 - 검사실 운영(양촌) : 검사 실적 없음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9년	55,400	52,628	-	2,772	
2020년	44,688	43,406	-	1,282	
2021년	26,330	12,193	-	14,137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의료기술8급 김민정	전화	500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4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30,000	
코로나19 임시검사소 한파대책비	201-01 사무관리비 (성립전예산 편성)	◎한파대비 방한복등 소모품 구입 = ◎난방기 렌탈 대여비 =	10,000 5,000	15,000
	206-01 재료비	◎자가가격리용 물품 등 구입 =	15,000	15,000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- 2021.11. : 특별교부세 교부
- 2021.11. : 성립 전 예산 편성 및 집행
- 2021.11. : 재투자계획수립 (성립 전 예산 외 잔액)
- 2021.12. :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	
2020년	-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건수 : 7,795건 (종합운동장 6,067건, 생활체육관 1,728건)	
2021년	-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건수 : 298,100건 (종합운동장 143,334건, 생활체육관 125,633건, 월곶차고지 17,423건, 공영주차장 11,710건)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3,000	23	-	2,977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감염병관리팀장 장미경	담당자	의료기술8급 조선진	전화	5052
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) (P - 12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9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2021. 9월 ~ 11월(3개월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선별진료소(보건소, 의료기관)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비 한시적 지원으로 원활한 진단검사 실시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	35,424					35,424	35,424	
국 비		17,712					17,712	17,712	
도 비		2,657					2,657	2,657	
시 비		15,055					15,055	15,055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국도비 보조사업 : 중앙방역대책본부-18971(2021.9.9.)호, 경기도 질병정책과-38155(2021.9.15.)호에 의한 2021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확정내시로 35,424천원 예산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조 제2항 제7호, 제8의2호
근거내용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확대된 진단검사에 대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경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워드코로나 대응 적극적인 진단검사 실시
- 지급대상 : 선별진료소(4개소) 및 임시선별검사소(3개소)의 1개월 이상 근무인력(운영, 의료, 행정인력)
- 지원금액 : 예산 범위 내에서 실 근무인원 수로 금액산정, 공무원과 비공무원, 업무 구분 없이 9~11월 근무일수별 계산하여 일률지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4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35,424	
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	301-12 기타보상금	◎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지급(비공무원) ·5,300원*57명(1일 평균 근무인원)*91일 =	27,224	
	303-01 포상금	◎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지급(공무원) ·5,300원*17명(1일 평균 근무인원)*91일 =	8,2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11. :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 계획 수립
- 2021.12. : 추가 경정예산 편성, 개별 근무상황 확인 및 지원경비(3개월)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- 선별진료소 4개소(보건소, 의료기관 3개소) -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운영	
2021년	- 선별진료소 4개소(보건소, 의료기관 3개소) -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(월곶공영차고지 임시선별검사소 8/31~9/30 운영)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-	-	-	-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보건행정팀장 김지영	담당자	간호6급 최보라	전화	5006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(성립전)) (P - 12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0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36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재택치료자에게 처방약 배송비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증진 및 일상 회복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	900					900	900	
국 비									
도 비		900					900	900	
시 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 교부(도비100%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근거내용	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,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“감염병관리기관등”이라 한다)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 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치료,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(이하 “시설치료”라 한다)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. 1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.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. 감염병의심자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빠른 처방약 배송을 통해 의료서비스 증진 및 일상 회복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	201-001 사무관리비	◎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 25,000원*36건 =	90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10. 1. : 김포우리병원 협약 체결
- 2021.10. 7. : 김포우리병원 연계 재택치료 시행
- 2021.10. : 성립전예산 편성·승인
- 2021.10. ~ 12. :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
- 2021.12. : 사업집행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해당없음	
2021년	- 코로나19 재택치료 실적 : 관리중 159명, 누계 675명 - 처방약 배송 건수 : 88건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		
2020년	-	-			
2021년	900	440	-	460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재택치료TF팀장 이명옥	담당자	간호7급 김향숙	전화	8383
-----	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(성립전)) (P - 12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1. ~ 12.
- 사업대상 : 김포시 재택치료자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재택치료 대상자 응급상황 발생 시, 신속한 이송으로 의료서비스 증진 및 일상 회복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	12,790					12,790	12,790	
국 비									
도 비		12,790					12,790	12,790	특별교부세
시 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‘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’ 도비 교부(2021.11.24.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근거내용	<p>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,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“감염병관리기관등”이라 한다)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치료,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(이하 “시설치료”라 한다)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.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. 감염병의심자 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재택치료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이송을 통해 의료서비스 증진 및 일상 회복 지원
- 재택치료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함. 이송비 예산 잔액(790천원)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관리키트 및 처방약 배송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4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12,790	
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	201-01 사무관리비	◎ 코로나19 응급환자 긴급이송비 수수료 250,000원*48건 = ◎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관리키트 및 처방약 배송비 19,750원*40건 =	12,000 79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10.1. : 김포우리병원 협약 체결
- 2021.10.7. : 김포우리병원 연계 재택치료 시행
- 2021.11. : 도비(특별교부세) 교부, 성립전예산 편성·승인
- 2021.12. : 재투자계획 수립
- 2021.12. : 코로나19 응급환자 긴급이송(민간시설구급대)
- 2021.12. :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해당없음	
2021년	- 코로나19 재택치료 실적 : 관리중 159명, 누계 675명 - 이송 건수 : 33건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12,790	-	12,790	-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재택치료TF팀장 이명옥	담당자	간호7급 김향숙	전화	8383
-----	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방역비) (P - 12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2.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대상 : 김포시 재택치료자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 전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재택치료 물품 구입으로 재택치료자의 건강 관리 지원
-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	29,000					29,000	29,000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	29,000					29,000	29,000	특별교부세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‘코로나19 방역비’ 특별교부세 교부(2021.11.30.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1조(감염병환자등의 관리)
근거내용	<p>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,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(이하 “감염병관리기관등”이라 한다)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(自家)치료,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(이하 “시설치료”라 한다)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</p> <p>2.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</p> <p>3. 감염병의심자</p>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약 전달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필요
-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배부용 방역 물품 구입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4회추경 요구액	비고
		합 계	29,000	
코로나19 방역비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◎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전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= 기본급 81,200원*2명*69일 = 11,210 유급휴일수당 81,200원*2명*21일 = 3,420 정액급식비 130,000원*2명*3.5월 = 910 시간외근무수당 15,225원*2명*20시간*3.5월 = 2,140 ◎ 4대 보험료 2,320,000원 = 2,320		20,000
	201-01 사무관리비	◎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구입 9,000,000원 =	9,000	9,000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11. : 특별교부세 교부
- 2021.12. :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, 명시이월
- 2021.12.~2022.03. : 기간제근로자 채용(2명) 및 계약체결
- 2021.12.~2022.12. : 재택치료 물품 구입 및 배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해당없음	
2020년	해당없음	
2021년	- 코로나19 재택치료 실적 : 관리중 159명, 누계 675명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-	-	
2020년	-	-	-	-	
2021년	29,000	-	29,000	-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행정과	재택치료TF팀장 이명옥	담당자	간호7급 김향숙	전화	8383
-----	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보건사업과



(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-통합건강증진사업) (P - 1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김포시민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(신체활동, 구강, 영양, 비만 등) 추진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예방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 감소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498,572	497,562	497,562	-	-	-	-	△1,010	
국 비	249,286	248,781	248,781					△505	
도 비									
시 비	249,286	248,781	248,781					△505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공무원근로자의 퇴직에 의한 인건비 및 출장여비 25,600천원을 비대면 홍보·교육 용품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
근거내용	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. 영양관리 3. 구강건강의 관리 4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 6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기존 9개의 국고보조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질병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

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 편성된 사업(8개) -

- ①신체활동사업 ②절주사업 ③영양, 비만사업 ④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⑤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
⑥구강보건사업 ⑦한의약건강증진사업 ⑧모자보건사업 (2021년 치매조기검진사업 제외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 고		
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	201-01 사무관리비	·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				
		- 교육용 책자 구입 1,000원*2,000부	=	2,000		
		- 홍보물 구입 2,000원*2종*4,500개	=	18,000		
		- 워크온 프로그램 사용료 1,620,000원*3개월	=	4,860		
		- 건강꾸러미 세트 제작 7,260원*3,000개	=	21,780		
		- 통합교육 워크북제작 5,000원*3,000개	=	15,000		
		- 사무용품구입 12,600원*30종	=	378		
		· 구강보건사업 운영				
		- 구강보건 교육용품 : 4,000원*1,000개	=	4,000		
		- 불소용액양치통 구입 : 600원*10,000개	=	6,000		
		- 구강보건 장비유지 및 운영 : 200,000원*6회	=	1,200		
		- 치주질환관리용품 : 2,000원*6,000개	=	12,000		
		- 맘브러쉬 구입 : 95,000원*10개	=	950		
		-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(버스광고) 645,000원*20회	=	12,900		
		- 구강 교육용 도서구입 600권*15,000원	=	9,000		
		· 심뇌혈관질환관리 운영				
		- 대사증후군 설문지 및 홍보지 제작 : 1,350원*2,000부	=	2,700		
		- 고정식 자동혈압기 장비 유지비 : 150,000원*15회	=	2,250		
		-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안내문 제작 : 50원*7,000부	=	350		
		-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예방관리책자 제작 : 1,000원*2,000권	=	2,000		
-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: 1,000원*3,000개	=	3,000				
·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						
- 재활사업 보장구 유지관리 : 100,000원*5회	=	500				
- 재활사업 한파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: 2,000원*2,600개	=	5,200				
·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	=	5,760				
·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운영						
- 교육용 책자 등 구입 : 3,000원*500개	=	1,500				
· 모자보건사업 운영						
-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: 5,000원*4종*1,000명	=	20,000				
· 통합건강증진 달력제작						
- 통합건강증진 건강달력 제작 : 3,000원*5,000부	=	15,000				
· 구강보건 교육용 물품 구입 : 800원*6,000개	=	4,800				
· 신체활동 홍보용품 구입 : 3,000원*1,000개	=	3,000				
· 유아 금주 교육용 퍼즐 구입 : 2,200원*2,000개	=	4,400				
· 지역사회중심재활 홍보물 제작 : 2,000원*2,200개	=	4,400				
· 성인 치주 관리 세트 구입: 5,600원*750개	=	4,200				
· 영양비만사업 교육물품 구입: 800원*1,000개	=	800				
· 영양사업 교육용 책자 구입: 4,000원*1,000권	=	4,000				
		소계 =	191,928	증25,600		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 고	
인력운영비 (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)	101-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	건강증진사업 공무원 인건비			
		· 기본급 : 2,367,310원*1명*6월(5호봉)	=	14,203	
		· 기본급 : 2,391,150원*1명*6월(6호봉)	=	14,346	
		· 명절휴가비 : 2,403,085원*1명*60%*2회	=	2,883	
		· 정액급식비 : 140,000원*1명*12월	=	1,680	
		· 4대보험 : 33,352,000원*13%	=	4,335	
		· 퇴직금 : 3,000,000원 *1명	=	3,000	
		· 여비 : 20,000원*12월	=	240	
		구강보건사업 공무원 인건비			
		· 기본급 : 2,343,490원*1명*2월(4호봉)	=	4,686	
		· 기본급 : 2,367,310원*1명*10월(5호봉)	=	23,673	
		· 명절휴가비 : 2,363,340원*1명*60%*2회	=	2,836	
		· 정액급식비 : 140,000원*1명*12월	=	1,680	
		· 가족수당 : 120,000원(배우자, 자녀2명)*12월	=	1,440	
		· 4대보험 : 34,316,088원*13%	=	4,461	
		· 퇴직금 : 3,000,000원 *1명	=	3,000	
		· 여비 : 20,000원*1명*12월	=	240	
		구강보건사업 공무원 인건비			
		· 기본급 : 2,367,310원*1명*5월(5호봉)	=	11,836	
		· 기본급 : 2,391,150원*1명*7월(6호봉)	=	16,738	
		· 명절휴가비 : 2,381,217원*1명*60%*2회	=	2,857	
		· 정액급식비 : 140,000원*1명*12월	=	1,680	
		· 가족수당 : 120,000원(배우자, 자녀2명)*12월	=	1,440	
		· 4대보험 : 34,552,060원*13%	=	4,491	
		· 퇴직금 : 3,019,000원 *1명	=	3,019	
		· 여비 : 20,000원*1명*12월	=	240	
		한방건강증진사업 공무원 인건비			
		· 기본급 : 2,393,480원*1명*4월(7호봉)	=	9,573	
· 명절휴가비 : 2,393,480원*1명*50%*1회	=	1,196			
· 정액급식비 : 140,000원*1명*4월	=	560			
· 가족수당 : 40,000원(배우자)*4월	=	160			
· 4대보험 : 11,489,000원*13%	=	1,493			
· 퇴직금지급 6,748,750원	=	6,748			
모자보건사업 공무원 인건비(1명*3개월)					
· 기본급 : 2,343,490원(4호봉)*1명*2월	=	4,686			
· 기본급 : 1,484,210원(4호봉)*1명*1월	=	1,484			
· 정액급식비 : 140,000원*1명*3월	=	420			
· 명절휴가비 : 1,406,094원*1명*1회	=	1,406			
· 4대보험료 : 7,997,284원*13%	=	1,039			
· 퇴직금 : 2,121,385원*1명	=	2,121			
		소계	=	155,890	

△25,6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: '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 제출, 계획수립
- 2021.03. ~ 11. :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
- 2021.12. :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<p>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비람건강체조마을 운영 : 695회/9,404명 ·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: 332회/11,457명 · 생애주기별 절주사업 : 103회/17,399명 · 통합건강증진사업 캠페인 및 홍보 : 2회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, 요리교실운영 : 63회/5,200명 ·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: 33회/424명 <p>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혈압· 당뇨 이동교실 : 51회/926명, 검사측정 : 2,778건 ·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 : 15회/1,599명 참여 ·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: 30회/428명 <p>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1,127명, 건강서비스 : 2,393회, 자원연계 105명 · 활력충전 재활프로그램 운영 : 34회/672명 참여 <p>구강보건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불소도포 : 2,603회/19,518명 · 어린이치과체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, 꾸러기이닦기교실 운영 : 34회/2,299명 ·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: 40회/364명 ·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 : 158회/8,585명 <p>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방기공체조교실 : 656회/12,212명 · 한방육아교실 : 14회/189명, 한방중풍예방교실 : 3회/69명 · 한방자연건강마을 : 8회/127명 <p>모자보건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신부 등록 및 관리 : 1,479명 · 임신부 건강프로그램 운영 : 63회/521명 · 임신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5,470개 	
2020년	<p>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: 건강100세 운동교실 등 15회 434명 · 건강증진센터 운영 : 1,275명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 : 492명 ·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: 2,594명 · 절주교육 : 758명 · 대사증후군관리사업(운동,영양,질환상담) : 258명(실인원) <p>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대면 고혈압· 당뇨 표준화 교육(상설) : 115회/115명 · 고혈압당뇨병 1:1 방문 표준화 교육 : 8회/166명 <p>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690명, 건강서비스 : 3,490회, 자원연계 246명 <p>구강보건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: 유아, 청소년, 장애인, 경로당 등 1,436회/33,845명 · 학교구강보건실운영 : 3회/272명 · 불소용액양치사업 : 시민 7,213명 ·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: 3개 유아기관/288명 · 임신부 구강관리사업 : 105명 <p>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: 893명 ·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: 10명 	

	모자보건사업 운영 · 임신부 등록 및 관리 : 3,602명 · 임신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11,523건	
2021년	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· 생애주기별 영양관리, 영양상담실 운영 : 745명 · 대사증후군관리사업(운동, 영양, 질환상담) : 456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영 · 비대면 고혈압 · 당뇨 표준화 교육(상설) : 16회/160명 · 고혈압당뇨병 1:1 방문 표준화 교육 : 80회/80명 · ‘당뇨야 놀러와!’ 요리실습 : 6회/33명 · 고당e 공부방 온라인학습 교육 : 90명 지역사회중심재활 운영 ·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: 626명, 건강서비스 : 2,066회, 자원연계 288명 구강보건사업 운영 ·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: 유아, 청소년, 장애인, 경로당 등 764회/41,379명 · 불소용액양치사업 : 시민 59,433명 · 바른이닦기실천 유아기관 : 5개 /274명 · 임신부 구강관리사업 : 276명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 · ‘한방으로 내 건강 지키기’ 사업 : 1795명 ·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: 9명 모자보건사업 운영 · 임신부 등록 및 관리 : 3,946명 · 임신부 영양제(철분제, 엽산제) 지원 : 15,840개	11.25.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559,232	554,598	-	4,634	
2020년	498,572	494,290	-	4,282	
2021년	497,562	404,795	-	92,767	11월25일 기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건강증진팀장 김애경	담당자	간호8급 이보은	전화	5016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(디지털온도계)) (P - 1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07 ~ 12.
- 사업규모 : 138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의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	34,500	20,250	-	-	13,000	1,250	34,500	
국 비		34,500	20,250			13,000	1,250	34,500	
도 비									
시 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질병정책과-39298(2021.09.27.)호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
-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백신보관용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(사후정산)
- 신청 위탁의료기관 수 증가(133개소 → 138개소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4조 3항, 제24조 2항, 제25조 1항, 2항
근거내용	<p>제4조 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24조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25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</p>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
- 냉장고 내부 온도 이탈 시 알람기능 및 실시간 모니터링, 데이터 저장 기능을 보유한 온도계 구비로 코로나 백신 안전한 보관
-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구매 후 온도계 제품 구매 금액을 보건소에서 사후 정산하여 1개소 당 최대 25만원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(디지털온도계)	200-201 사무관리비	· 디지털온도계구입비 지원 250,000원*5개소 =	1,250	증 1,25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22. :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
- 2021.02. ~ :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상황실 운영
- 2021.03. ~ :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및 계약 실시
- 2021.05. ~ :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

□ 최근 추진실적

○ 최근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1년	· 위탁의료기관 계약 완료: 138개소 ·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실적 : 127개소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33,250	27,127	-	6,123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8급 서화정	전화	830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(지역예방접종 센터 운영지원)	201-01 사무관리비	소계 =	100,000	증 100,000
		·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철거 =	95,000	
		· 예방접종센터 소모품 등 구입 =	5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22. :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
- 2021.02.26. :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
- 2021.04.15. :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
- 2021.04.29. : 김포생활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
- 2021.10.30. : 김포생활체육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철거
- 2021.11.30. : 김포시민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철거 예정

□ 최근 추진실적

○ 최근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(2개소) : 1차 78,213명 / 2차 76,677명 - 보건소 및 자체접종 : 1차 7,819명 / 2차 7,579명 - 위탁의료기관 : 1차 294,623명 / 2차 280,196명 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630,000	606,355	-	23,645	11.25일 기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6급 손정원	전화	548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(희석액))(성립전) (P - 12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05. ~ 12.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민간위탁의료기관 129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중증 사망 예방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	32,384	-	-	2,264	12,584	17,536	32,384	
국 비		32,384			2,264	12,584	17,536	32,384	
도 비									
시 비								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道 질병정책과-39992(2021.10.01.)호와 관련,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(화이자백신 희석액) 국고보조금 변경내시
-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실시 민간위탁의료기관 129개소에 희석액 구입하여 지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5조(임시예방접종) 제1항 제1호
근거내용	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. 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화이자 백신은 생리식염주사액을 주입·희석하여 접종(백신 1바이알당 희석액 1앰플 사용)
-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(화이자 백신)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주사액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(희석액)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생리식염주사액 구입 1,000원 * 17,536앰플 =	17,536	증 17,536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24. :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
- 2021.02. ~ : 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상황실 운영
- 2021.03. ~ :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및 계약 실시
- 2021.04. ~ :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(2개소) 개소(21.04.15 / 21.04.29.)
- 2021.05. ~ :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

□ 최근 추진실적

○ 최근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1년	· 위탁의료기관 계약 완료 : 138개소 - 138개소 중 화이자 백신 접종 기관 129개소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32,384	11,948	-	20,436	11.25일 기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8급 이미나	전화	5480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)(신규) (P - 12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2. ~ 04.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3명(접종콜센터 운영 인력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(부스터샷) 시행에 따른 예약 콜센터 운영으로 접종률 제고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-	29,000	-	-	-	-	29,000	29,000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	29,000					29,000	29,000	특교세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예산담당관-21285(2021.11.30.)호와 관련, 2021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
-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(부스터샷) 실시에 따른 콜센터 지속 운영(교부액 이월 예정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25조(임시예방접종) 제1항 제1호
근거내용	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. 1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약(3명)
-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31355(2021.11.18.)호와 관련, 고위험군 조기 추가접종 실시를 위한 민원응대 및 온라인 사전예약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	101-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	· 기본급 : 81,200원*3명*81일 =	19,731	
		· 유급휴일수당 : 81,200원*3명*23일 =	5,602	
		· 4대보험료 : 3,667,000 =	3,667	
		소계 =	29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12. : 근로계약서 작성
- 2022.01. ~ 04. :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자체)) (P - 124)
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규모 : 4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·신생아 건강증진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45,000	0	40,000	-	-	-	△40,000	△45,000	
국비									
도비									
시비	45,000	0	40,000				△40,000	△45,000	
기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건강증진과-2583(2021.02.08.)호와 관련, 예산 전액 삭감
- 산모도우미 지원사업(국비)의 대상자 확대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국비 지원 가능하여 시비 지원 사업 불필요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15조의 18
근거내용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산모·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국비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에서 예외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출산가정으로 확대 실시
- (기존사업내용)산모·신생아 대상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
 - 대상 : 셋째아 이상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(산모 거주기간 1년 이상)
 - 내용 : 출산 후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해 주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자체)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셋째아) : 1,000,000원*0명 =	0	△ 4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~ 12. : 국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실시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34명	
2020년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26명	
2021년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0명	11.25.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45,000	45,000	-	-	
2020년	15,000	15,000	-	-	
2021년	4,000	-	-	4,000	11.25.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6급 임은영	전화	8300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) (P - 12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규모 : 15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입원 치료비용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치료 지연·포기를 방지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46,000	90,000	48,000	12,000	-	-	30,000	44,000	
국 비	23,000	45,000	24,000	6,000			15,000	22,000	
도 비	11,500	22,500	12,000	3,000			7,500	11,000	
시 비	11,500	22,500	12,000	3,000			7,500	11,000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건강증진과-17936(2021.10.08.)호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- 2021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 증가 : 90명(2020년) → 150명(2021년 예상)
※ '21.10.31. 현재 접수 인원 : 125명(67,227천원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 1항, 2항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미숙아 의료비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체중 2.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-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출생아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	307-01 의료 및 구료비	·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600,000원 * 50명 =	30,000	증 3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~ 02. : 사업 계획 수립.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 대상 사업 홍보
- 2021.01. ~ 12. : 대상자 상담, 접수 및 의료비 지급
- 2021.12. : 사업 집행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·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79명	
2020년	·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90명	
2021년	·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74명 ※ 2021년 국도비 교부금 및 예산 부족으로 집행 지연 (실 접수 인원 : 133명)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88,200	52,364	-	35,836	
2020년	46,000	45,882	-	118	
2021년	60,000	36,145	-	23,855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※ 2021년 국도비 교부금 및 예산 부족으로 집행 지연. (실 접수 금액 : 78,519천원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출산장려사업 운영) (P - 12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2,51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저출산·고령화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1,029,526	1,850,335	1,790,335	-	-	-	60,000	820,809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1,029,526	1,850,335	1,790,335				60,000	820,809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출산축하금 신청자 수 증가 (연초 월 평균 예상 신청건수 : 137건 → 최근 월 신청 건수 : 150건 이상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지원내용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2. 출산축하금 4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회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0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김포시 180일 이상 거주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 고
출산장려사업 운영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출산축하금 지급(둘째아 이상) : 1,000,000원 * 60명 =	60,000	증 6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: 출산장려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
- 2021.01. ~ 12: 사업추진, 대상자 상담 및 안내
- 2021.12. : 출산장려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· 출산축하금 : 2,838명 / 416,450천원 · 신생아 건강보험 : 1,357명/ 238,017천원	
2020년	· 출산축하금 : 2,322명 / 724,100천원 · 신생아 건강보험 : 1,080명 / 163,133천원	※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 변경 - 20.7.1. 이전 출생아 : 첫째 둘째아 5만원 셋째아부터 100만원 + 신생아 보험 - 20.7.1. 이후 출생아 : 둘째아부터 100만원
2021년	· 출산축하금 : 1,495명 / 1,469,350천원 · 신생아 건강보험 : 692명 / 199,461천원	11.25일 기준

※ 신생아 건강보험 : 20.3.25. 「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20.7.1.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보험이 중단되었으며, 기존 대상자들에 한하여 만 4세까지 지원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807,955	654,467	-	153,487	
2020년	1,029,526	887,234	-	142,292	
2021년	1,790,335	1,668,811	-	121,524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) (P - 12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75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발견·치료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44,364	91,000	46,000	-	-	-	45,000	46,636	
국 비	22,182	45,500	23,000				22,500	23,318	
도 비	11,091	22,750	11,500				11,250	11,659	
시 비	11,091	22,750	11,500				11,250	11,659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건강증진과-17936(2021.10.08.)호 변경내사에 따른 증액
- 2021년 특수 조제분유 지원 신규 환아 증가 (2020년 신규 환아 : 6명 → 2021년 신규 환아 : 21명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
 - 선별검사비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실시한 외래 선별 검사비(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비)의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
 - 확진검사비 지원 :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
-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
 -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분유 및 치료비(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)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조제분유 지원 : 1,500,000원*15명*2회 =	45,000	증 45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~ 02. : 사업 계획 수립. 산부인과·소아과 등 관련 의료기관 대상 사업 홍보
- 2021.01. ~ 12. : 대상자 상담, 접수 및 의료비·특수 조제 분유 지급
- 2021.12. : 사업 집행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·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(1명/1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29명/37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7명/28건)	
2020년	·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13명/14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13명/30건)	
2021년	·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(3명/3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(15명/18건) ·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 조제분유 지원(17명/25건) ※ 국도비 교부금 및 예산 부족으로 집행 지연 -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조제분유 실 접수 건수 : (25명/62건)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72,600	62,369	-	10,231	
2020년	44,364	39,068	-	5,296	
2021년	46,000	35,440	-	10,560	11.25.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※ 2021년 국도비 교부금 및 예산 부족으로 집행 지연. (실 접수 금액 : 96,263천원)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임신축하금 지원) (P - 12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3,912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임신축하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가정경제 부담 완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2,150,000	1,962,000	1,800,000	-	-	-	162,000	△188,000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2,150,000	1,962,000	1,800,000				162,000	△188,000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임신축하금 신청자 수 증가 (연초 월 평균 예상 신청건수 : 300건 → 월 평균 신청 건수 : 326건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	제1조
근거내용	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녀출산가정에 임신·출산 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2020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임신축하금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까지 확대하여 신청자 수 증가
- 목표 대비 신청자 수 8.6% 상승으로 예산 증액 필요
- 김포시 거주 180일 이상 지난 임산부에게 김포페이로 50만원 지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임신축하금 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임신축하금 : 500,000원*324명	= 162,000	증 162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- 2021.01. :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계획수립
- 2021.01.~ 12. : 매일 신청자 접수 및 임신축하금 지급, 홍보
- 2021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□ 최근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 3년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2019. 1. 13. :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- 2019. 1. 14. : 임신축하금 지원계획 결재 - 2019. 1. 16.~ 4.30. :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사전컨설팅 요청 및 협의 완료 - 2019. 5. 1. ~ 7.30. :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조정 및 입법예고(여성가족과 협의) - 2019. 8. 13. :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원안가결(여성가족과 협의) - 2019. 9. 2 ~ 9. 11 : 제195회 임시회 조례개정안 상정(여성가족과)	
2020년	- 2020. 1. : 임신축하금 접수 시작 - 임신축하금 지원 : 4,159명 / 2,079,500,000원	
2021년	- 2021.4.19. :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온라인(정부24)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- 임신축하금 지원 : 3,586명 - 임신축하금 예탁 현황 : 1,800,000,000원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20년	2,150,000	2,079,500	-	70,500	
2021년	1,800,000	1,793,000	-	7,000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8급 김예슬	전화	548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난임부부 시술비 지원) (P - 12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08
- 사업규모 : 2,086건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(일부) 지원으로 출산율 증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446,000	957,000	566,000	-	-	200,000	191,000	511,000	
국 비	223,000	478,500	283,000			100,000	95,500	255,500	
도 비	111,500	239,250	141,500			50,000	47,750	127,750	
시 비	111,500	239,250	141,500			50,000	47,750	127,750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건강증진과-20664(2021.11.15.)호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- 가임여성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시술 지원비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2020.11.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체외수정 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41% 증가, 인공수정은 전년 대비 5% 증가하여 예산 증액 필요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총 5회, 체외수정 시술비 총 7회에 한하여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소계 =	191,000	증 191,000
		· 인공수정 시술비 : 200,000원*60명*2회	= 24,000	
		· 체외수정 시술비 : 500,000원*167명*2회	= 167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향후계획

- 2021.01.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수립
- 2021.01.~ 12. : 매일 신청자 접수 및 시술비 지급, 홍보
- 2021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난임시술비 지원 (체외수정 579건 / 인공수정 235건)	
2020년	난임시술비 지원 (체외수정 1136건 / 인공수정 256건/약제비 465건)	
2021년	난임시술비 지원 (체외수정 876건 / 인공수정 247건 / 약제비 356)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9년	420,000	347,329	-	72,671	
2020년	446,000	445,996	-	4	
2021년	766,000	765,589	-	411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간호8급 김예슬	전화	5482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) (P - 12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규모 : 6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3,600	7,200	3,600	-	-	-	3,600	3,600	
국 비	1,800	3,600	1,800				1,800	1,800	
도 비	900	1,800	900				900	900	
시 비	900	1,800	900				900	900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건강증진과-15480(2021.8.30.)호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- 2021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자 수 두 배 증가 (2020년 3명 → 2021년 6명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(1인당 최대 1,200천원)
- 청소년산모가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(조산원 포함) 지원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(약국포함)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: 1,200,000원*3명 =	3,600	증 3,6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~ 02. : 사업계획 수립
- 2021.01. ~ 12. : 사업 홍보, 대상자 상담 및 안내
- 2021.12. : 사업 집행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·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: 2명	
2020년	·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: 3명	
2021년	·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: 6명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3,600	2,975	-	625	
2020년	3,600	2,313	-	1,287	
2021년	3,600	3,600	-	0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) (P - 1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규모 : 290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치료·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71,400	74,000	52,000	18,000	-	-	4,000	2,600	
국 비	35,700	37,000	26,000	9,000			2,000	1,300	
도 비	17,850	18,500	13,000	4,500			1,000	650	
시 비	17,850	18,500	13,000	4,500			1,000	650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 건강증진과-17462(2021.10.01.)호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
- 전년 대비 1인당 의료비 신청액 증가(20년 1인 평균 지원액 : 280천원 → '21년 1인 평균 지원액 : 400천원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모자보건법	제3조
근거내용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정의 임신부 중 조기 진통, 분만 시 과다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임신부에게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%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4회추경 요구액	비고
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	307-01 의료 및 진료비	·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: 400,000원*10명 =	4,000	증 4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~ 02. : 사업 계획 수립. 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 사업 홍보
- 2021.01. ~ 12. : 대상자 상담, 접수 및 의료비 지급
- 2021.12. : 사업 집행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·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: 150명	
2020년	·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: 250명	
2021년	·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: 176명	11.25일 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68,000	47,643	-	20,356	
2020년	71,400	69,386	-	2,014	
2021년	70,000	61,342	-	8,658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모자보건팀장 손정원	담당자	보건9급 김지선	전화	5487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치매치료관리비 지원) (P - 1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 ○ 위 치 : 사우중로 73번길 52
- 사업규모 : 970명(60세 이상 치매치료약 복용자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악화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146,812	298,310	238,310	-	-	-	60,000	151,498	
국 비	73,406	149,155	119,155				30,000	75,749	
도 비	11,011	22,373	17,873				4,500	11,362	
시 비	62,395	126,782	101,282				25,500	64,387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【경기도 건강증진과-18465(2021.10.14.)호】
-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예정 부족분(3개월) 예산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치매관리법	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
근거내용	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 악화 방지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
- 대 상 :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김포시 거주 만 60세 이상(중위소득 120% 이하)
- 지원액 : 월 최대 3만원(연 36만원) 한도 내 급여부분 본인부담금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 고
치매치료관리비 지원	307-01 의료및구료비	· 치매치료관리비(970명) = 298,310	증 60,000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

-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증상 심화방지,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
- 2010년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작(전국가구 평균소득 50%이하)
- 2010년 11월 : 보건소장 인정자(CDR1점이하,GDS5단계이하,초로기환자,기초노령연금수급자) 확대지원
- 2013년 : 평균소득 100%이하 지원 변경
- 2016년 : 지원대상자의 정기소득기준 조사 매 2년마다 실시
- 2017년 : 평균소득 120%이하 지원 변경(단, 3인 가족 평균소득 100%유지)
- 2019년 ~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단, 3인 가족 평균소득 120% 변경)

○ 지원절차

- 대상자 : 보건소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
- 보건소 : 치매치료관리비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통보 및 치료관리비 예약
- 국민건강보험공단 : 대상자에게 매월 치료비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치매치료관리비 지원 : 902명 / 3,454건	
2020년	치매치료관리비 지원 : 975명 / 4,169건	
2021년	치매치료관리비 지원 : 982명 / 4,695건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145,078	145,078	-	-	
2020년	193,000	193,000	-	-	
2021년	238,310	238,310	-	-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건사업과	치매관리팀장 이청희	담당자	간호8급 박다윗	전화	5233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북부보건과



(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) (P - 128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 중 ○ 위 치 :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25, 통진메디컬타워 4층
- 사업규모 : 5개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18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유연성과 체력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)= (C+D+E+F+G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4회 추경 (G)		
계	750	0	37,860			△17,700	△20,160	△750	
국 비									
도 비									
시 비	750	0	37,860			△17,700	△20,160	△750	
기 타	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-19 관련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사업 중단에 따른 예산 반납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국민건강증진법	제6조 제1항
근거내용	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청춘드림 체조마을 사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모이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으로
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에 따른 강사로 반납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4회추경 요구액	비고
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		합 계	△20,160	
	201-01 사무관리비	· 현수막 제작 30,000원*12개소 =	△360	
	301-12 기타보상금	· 청춘드림 체조마을 운영 강사비 50,000원*9명*44회 =	△19,8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코로나19로 운동사업 중단에 따른 강사비 전액 반납	
2021년	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운동사업 중단	11.25일까지 추진실적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750	750	0	0	
2021년	20,160	0	0	20,160	11.25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북부보건과	건강생활팀장 이석창	담당자	의료기술6급 이석창	전화	4181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